

TaxFlash

Tax Indonesia / November 2024 / No. 14

Streamlining of tax regulations for the upcoming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P1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도입에 따른 세무 규정 간소화

2024 년 10 월 18 일, 재무부 장관(MoF)은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도입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PMK-81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MK-81 은 기존 42 개 PMK(부록 A 참조)를 철회하였는데,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향후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PMK-81 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PMK-81 은 앞서 철회된 PMK 에서 언급된 기존 규정들을 대부분 채택하였으나, 월별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한 납부 및 보고 기한을 조정하고, 여러 용어를 통일하고, 납세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조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PMK-81 은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새로운 Core Tax System 에서 납세자의 예치금 및 전자 통신 채널(Electronic communication channels)과 같은 새로운 경로를 도입하여 다양한 기존 행정 절차 매커니즘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PMK-81 은 소득세, 부가세(VAT), 사치세(LST), 인지세, 판매세, 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 탄소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 관련 절차에 적용됩니다.

PMK-81 의 전반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 의무 이행 및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로 결정문 및 전자 문서의 발행, 서명,
 송달 절차를 포함;
- 납세자 등록, 부가세 과세 사업자(PKP) 지정 및 PBB 대상 등록 절차;
- 세금 납부 및 송금 절차, 오납 세금 및 이자 환급, 과다 납부 세금 환급 절차;



¹ MoF Regulation No.81 Year 2024 ("PMK-81") dated 18 Octo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

- 세금 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규정은 부록 B 참조):
-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현을 위한 기술 제공;
- 문서 양식 샘플 및 계산, 징수 및/또는 보고 관련 예시.

본 TaxFlash 에서는 PMK-81 발행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주요한 행정 메커니즘 및 세무 규정 변경에 대하여 요약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A. 행정 매커니즘의 변경

1. 납세자 권리 및 의무의 전자적 이행

PMK-81 은 납세자가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으로 전자적 채널을 설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거주지에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통신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 재해로 인해 전자적 채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전자적 채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채널은 다음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납세자 포털:
- b. 국세청(DGT) 행정 시스템과 통합된 다른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 c. 연락 센터.

2. 납세자 계정(Taxpayer account)

국세청(DGT)은 납세자 포털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계정을 부여합니다.

PMK-81 에 따르면, 납세자 계정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이행과 DGT의 업무 및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및/또는 정보를 기록, 저장 및 제출하는 장소로 간주되며, 이는 납세자 식별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납세자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세자 포털을 통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전자 메일(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검증된 후 승인됩니다. 납세자 계정 활성화 과정에서, 납세자는 DGT 로부터 전자적 서신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납세자 계정이 사용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 계정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a. 전자 문서 형태의 결정문(예: 세금추징결정서, 징수 통지서 등) 등 전자 문서의 송수신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자 형태의 결정문에 서명하기 위한 전자 인장은 2025 년 1월 1일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b. 납세자와 DGT 간의 서신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납세자 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를 받기 위한 등록 신청, 정보 변경 신청 등이 해당됩니다.

3. 전자 채널에서의 발송 및 수신 일자

세금 관련 문서의 발송 및 수신 일자는 특정 세무 행정 절차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적 채널에서의 발송 및 수신 일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a.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동일한 문서를 전자적인 방법과 하드카피로 제출할 경우(전자 채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신 일자는 DGT 행정 시스템에 처음 기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b. DGT 의 경우:
 - DGT 는 종이 형태로 송부되어야 하는 문서와 결정문을 제외하고, 납세자 계정 및/또는 DGT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납세자에게 결정문 및 전자 문서를 발송합니다.
 - 발송 일자는 DGT 측 발송 일자인 동시에 납세자의 수신 일자로 간주됩니다.
 - 위 DGT 의 발송 일자를 결정하는 기준 시간은 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를 따릅니다.

납세자의 요청이나 DGT의 사정에 따라, DGT는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 팩스, 또는 우편/배송/택배 서비스를 통해 하드카피 문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DGT 가 두 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결정문이나 전자 문서를 보내는 경우, DGT 의 발송 일자와 납세자의 수신 일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a. 납세자가 승인된 납세자 계정을 보유한 경우: 납세자 계정으로 발송한일자.
- b. 납세자가 승인된 납세자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발송 일자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일자로 결정됩니다:
 - DGT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발송 일자:
 - 직접 배송 일자;
 - 팩스 발송 일자; 또는
 - 배송 증명서에 명시된 발송 일자.

4. 예치 세금(Tax Deposit)

예치 세금은 특정 세금 납부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세금 납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예치금은 대체 또는 전용(Overbooking) 과정을 통해 세금 납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은 예치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예치금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전자 국고 수입 시스템(electronic state revenue system)을 통한 납부;
- b. Overbooking 신청;
- c. 세금 초과 납부 또는 이자에 대한 환급 신청 (다른 세금 의무와 상계 후).

예치 세금을 통한 세금 납부 일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방법 a 를 통해 예치된 경우 국고 수입 영수증에 명시된 납부 일자.
- 방법 b 를 통해 예치된 경우 Overbooking 증명서에 명시된 납부 일자.
- 방법 c 를 통해 예치된 경우 환급 결정서(Surat Keputusan Pengembalian Kelebihan Pembayaran Pajak/"SKPKPP") 발행 일자.

5. 과다납부세액의 계산 및 환급

본 섹션은 과오납 세금 및 이자 환급,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PMK-81 은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
 제 36 조 제 1 항 (d) 항목에 따른 과세결정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SKP")의 취소(PBB 과세통지서 포함);
- KUP 법 제 27C 조 제 6 항에 따른 상호 합의 결정문 발행;
- KUP 법 제 36 조 제 1 항 (b) 항목에 따른 PBB 과세통지서(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g)의 감액 또는 취소.

PMK-81 은 PBB 관련하여 SKPKPP 발행 지연시 이자가 환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세 가지 추가 법적 근거로 과다납부세액 환급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 PBB 감면 결정서(Surat Keputusan Pengurangan), PBB 행정 벌금 감면 결정서(Surat Keputusan Pengurangan Denda Administrasi)를 제시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환급 세액은 납세자의 미납 세액과 상계한 후 납세자에게 송금되거나 다른 납세자의 납부 세액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PMK-81 에 따르면, 환급 세액은 Core Tax system 에 등록된 납세자 예치세금(Tax Deposit)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DGT는 납세자에게 선택사항에 대한 확인 요청을 보내며, 납세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SKPKPP 발행 기한 하루 전(둘 중 빠른 날짜)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DGT는 환급세액을 납세자에게 송금합니다.



납세자에게 송금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세금 데이터베이스 프로필에 등록된 납세자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은행 계좌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DGT 는 납세자에게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인	은행 계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세 환급	관광객 본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의 대표/공무원	관련 당사자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	
해외 납세자가 직접 요청하는 환급	해외 납세자 본인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 또는 해외	
에지 답체시기 극답 표정에는 된답	납세자가 지정한 당사자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인수 합병을 진행하는 납세자	인수 합병 과정에서 양수인의 명의로 된 국내 은행 계좌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의 명의로 된 국내 은행 계좌	
과오납 세금에 대한 납세	나비 이미지 면이이 그네 오해 게지	
의무자(penanggung pajak)	납세 의무자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파산한 납세자(pailit)	파산 관재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해산 중인 납세자	해산 관재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청산 중인 납세자	청산관재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배분되지 않은 상속재산	상속인 또는 유산 집행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국내 은행	
	계좌	
DGT 에서 정한 기타 환급 사항		

일정 및 절차

기존 규정에 따르면, 환급은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발행하는 등 특정 상황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PMK-81 에서는 세금 환급 결정서(SKPKPP), 초과 납부 세액 환급 지시서(Surat Perintah Membayar Kelebihan Pajak/"SPMKP"), 이자 환급 지시서(Surat Perintah Membayar Imbalan Bunga/"SPMIB") 문서를 기준으로 환급기한을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GT는 특정 상황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은행 계좌 번호를 포함(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우)하거나 은행 계좌 번호 없이(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SKPKPP를 발행합니다. 해당 발행 일자는 납부 세액과의 상계하거나 환급액을 예치 세금(Tax deposit)에 이체하는 기준일자가 됩니다.
- 이후 DGT 는 은행 계좌 번호가 포함된 SKPKPP 발행 후 한 달 이내에 SPMKP 또는 SPMIB 를 발행합니다. 다만, SKPKPP 가 은행 계좌 번호 없이 발행된 경우 DGT 는 납세자가 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한 후 한 달이내 SPMKP 또는 SPMIB 를 발행합니다.



6. 소송 및 재심청구(PK) 판결의 수령 일자 활용

GR-50² 규정에 따라, PMK-81 은 DGT 가 소송 및 재심청구 판결을 수령한 일자를 (이전에는 판결이 발표된 날짜) 다양한 세금 행정 절차에서 기준 일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및 재심청구 판결일은 이자 보상 금액 계산의 한도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7. 세금 납부 및 신고

세금 납부 및 신고 일정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절차을 따르나, 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PMK-81 에서는 주로 예전 규정, 예를 들어 2000 년 이전에 제정된 규정의 기한을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부가세 징수자에 대한 월별 부가세 신고 전자상거래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월별 부가세 신고서를 통해 부가세 금액을 매월 징수, 송금 및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익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분기별로 부가세가 신고되었습니다.
- **재무제표 첨부** 연간 소득세 신고서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되는 경우, 재무제표도 DGT 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되어야 합니다.
- **탄소세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PMK-81 은 납세자가 탄소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2 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제출 기한 도래 전 DGT 에 전자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연장됩니다.

추가로, PMK-81 은 여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예를 들어, 모든 유형의 원천징수세 신고에 있어 통합 세금 신고서(Unification Tax Return)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 재무 부처에 의해 지정된 수납 은행, 수납 우체국, 외국환 수납 은행, 기타 수납 기관, 기타 외국환 수납기관 등 세금 납부 채널을 통합하여 징수 기관(Collecting Agents)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² MoF Regulation No.50 Year 2022 ("GR-50") dated and effective from 12 December 2022



TaxFlash | Page 6 of 16

8. 납세자 권리 및 의무 이행의 중앙 집중화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이행은 거주지나 소재지에 등록된 납세자 번호를 기준으로 중앙 집중화 되며,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 년 1 월 월별 세금 신고;
- 2025 년 과세연도의 연간 PBB 신고

9. 토지 및 건물(L&B) 양도에 대한 최종 분리 과세

L&B 양도에 대한 최종 분리 과세 신고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기관에 L&B 를 양도 시 세금 납부 영수증은 판매자가 아닌 정부 기관 명의로 발행됩니다. 적용 세율이 0%인 경우 해당 납부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정부는 여전히 판매자에게 통합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판매자의 거주지나 소재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양도는 정부 기관의 소재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L&B 양도를 사업으로 하는 판매자의 경우, L&B 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10. 상장 주식 창업주에 대한 0.5% 최종 분리 과세

창업주 주식에 대한 0.5% 원천징수 세금은 발행자가 징수하며(이전에는 납부), 발행자는 해당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된 후 1 개월 이내 세금을 납부하고, 익월 20 일까지 통합 세금 신고서(Unification Tax Return)를 통해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발행자는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발급하여 창업주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1. Omnibus Law 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배당금의 세금 신고

국내 개인 납세자가 받은 국내 배당금(면세 자격을 갖추지 않은)에 대한 세금은 통합 세금 신고서(Unification Tax Return)를 통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개인 국내 납세자가 세금 납부 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2. 세제 혜택 신청 요건의 변경

본 섹션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F 요건 일반적으로, 주주나 납세자는 PER-03³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국세 완납 증명서(Surat Keterangan Fiskal/"SKF")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한 장부가치 활용, Tax Allowance 또는 노동 집약 산업 및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특별소득공제(Super Deduction) 혜택 신청 시 SKF 의 디지털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제 혜택 적용 개시를 위한 세무조사 기존에는 세제 혜택 개시를 위한 세무조사시 현장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PMK-81 은 Tax Allowance 및 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특별소득공제(Super Deduction) 개시를 위한 검증을 위한 기타 목적의 세무조사로 변경됩니다.
- 전자 신청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한 장부가치 활용은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B. 세무 규정 변경

1. 특정 납세자를 위한 소득세법 제 25 조 월별 소득세 분할 납부

은행, 상장 기업, 국영 기업(SOEs) 및 정기적인 재무 보고 의무가 있는 기타 납세자는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 25 조 월별 소득세("Article 25") 분할 납부액를 계산합니다. 재무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 25 조 분할 납부액는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재무보고서 제출 후 해당 분할 납부액을 재계산하여 과다 납부가 발생한 경우, 과다 납부액은 환급되거나 연간 법인세(CIT) 신고서상에 선납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이월 공제만 가능하였습니다.

은행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프로세스로 인해 연간 재무제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은행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분할 납부액은 이전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분기(마지막 분기) 재무 보고 의무가 없는 기타 납세자 및 비은행 상장 기업의 경우, 첫 분기의 분할 납부액은 이전 과세연도 첫분기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세제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³ DGT Regulation No.PER-03/PJ/2019 ("PER-03")



TaxFlash | Page 8 of 16

- 이전 연도에 3% 법인세(CIT) 감면 혜택을 받은 상장 기업은 분할 납부액 계산시 이전 연도의 CIT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Tax Allowance(일반 및 특별 경제 구역(Kawasan Ekonomi Khusus /"KEK") 규정에 따른) 및 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특별소득공제(Super Deduction)을 적용받는 상장 기업, 국영 기업(SOEs) 및 기타 납세자는 해당 혜택에 따른 세액공제를 고려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할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Tax Holiday(일반, KEK 및 "Nusantara" 신수도 규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는 은행, 상장 기업, 국영 기업(SOEs) 및 기타 납세자는 해당 혜택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 31E 조에 따라 50% 법인세(CIT)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혜택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국가별 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국내 납세자로 인정된 외국인은 특정 기술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주자가 된 후 처음 4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해외에서 지급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PMK-81 에서는 신청자가 과거 2 년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금 Overbooking

PMK-81 에서는 세금 Overbooking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a.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Overbooking 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치 세금(Tax deposit) 사용;
 - 검증되지 않은 L&B 양도 소득세 납부;
 - 디지털 스탬프 기계(Digital stamp machine)의 예치금 잔액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지 않은 인지세 선납금;
 -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 b. 직권에 의한 Overbooking 은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
 - 오류로 인한 과오납 세액 발생:
 - 데이터 및 정보에 기반하여 Overbooking 이 필요한 세금;
 - NPWP 해지 시 잔존 예치 세금;
 - 사업 합병으로 인해 NPWP 가 해지된 납세자의 예치 세금;
 - 국고청(Directorate General of Treasury)에 의해 세입 데이터 수정 대상이 되는 세금 납부;
 - 집행관 압류에 따른 세금.



과다 납부 세금에 대한 Overbooking 은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a. 부가세법 제 9 조 제 8 항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VAT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 영수증;
-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인지세 납부:
 - 조폐공사(Perum Peruri)가 수행하는 전자 스탬프 유통에 협력하는 사업체에 전자 스탬프의 배포:
 - 국영 우편 서비스 기업인 PT Pos Indonesia (Persero)에 의해 수행되는 우표 판매.
- c. DGT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 의해 발급된 청구 코드를 통한 세금 납부:
- d. 월별 세금 신고로 간주되는 세금 납부;
- e. 연간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서 제출에 따른 세금 납부:
- f. 과세 통지서(Surat Tagihan Pajak), SKP, 수정 결정서(Surat Keputusan Pembetulan), 이의 결정서(Surat Keputusan Keberatan), 공동 합의 결정서(Surat Keputusan Persetujuan Bersama), 소송 판결(Putusan Banding), 및 재심청사 판결(Putusan Peninjauan Kembali)에 따라 증가된 납부해야할 세액과 상계 처리된 세금 납부

C. 시행 규정

PMK-81 은 국세청(DGT), 재무부 및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시행 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PMK-81 에 열거된 대부분의 조항은 기존의 시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기존 규정은 재발행이 필요할 수 있지만, PMK-147⁴, PMK-48⁵, PMK-242⁶ (최종적으로 PMK-18⁷에 의해 개정), PMK-243⁸ (최종적으로 PMK-18 에 의해 개정)의 시행 규정은 PMK-81 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D. 경과 규정

PMK-81 의 경과 규정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제공합니다. 주요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⁸ MoF Regulation No.243/PMK.03/2014 concerning Tax Returns ("PMK-243")



⁴ MoF Regulation No.147/PMK.03/2017 concerning procedures for taxpayer registration and deletion of NPWPs as well as appointment and revocation of PKP ("PMK-147")

⁵ MoF Regulation No.48/PMK.03/2021 concerning procedures for registration, reporting, and data collection of L&B Tax Object ("PMK-48")

⁶ MoF Regulation No.242/PMK.03/2014 concerning procedures for tax payment and remittance ("PMK-242")

⁷ MoF Regulation No.18/PMK.03/2021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No.11 Year 2020 on job creation in the fields of Income Tax, VAT, and LST, as well as KUP ("PMK-18")

- 납세자는 2024 년까지 세금 신고 목적으로 전자 인증서, 전자 신고 식별 번호 및 인증되지 않은 전자 서명에 대한 국세청(DGT)이 발급한 검증 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GT는 2024 년까지 세금 관련 결정에 대해 전자 형태로 결정서 발행, 서명 및 전달을 위해 인증되지 않은 전자 서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2025 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PMK-81 발행되기 전의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며 예를 들어, 이자 환급에 대한 결정서(Surat Keputusan Pemberian Imbalan Bunga)는 발급되었으나 이자 환급 계산 결정서(Surat Keputusan Perhitungan Pemberian Imbalan Bunga)가 2025 년 1월 1일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 PMK-81의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2024 년까지의 세금 신고서의 형식, 제출 및 처리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2024 년 12 월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월별 인지세 신고서(Monthly Stamp Duty Tax Returns)는 PMK-81 규정을 따릅니다.
- 또한, PMK-81 은 GR-34⁹ (일반 목적) 및 GR-40¹⁰ (특수 목적 회사 또는 집합투자 계약(Kontrak Investasi Kolektif/"KIK")에 대한 부동산 양도)에 의거토지 및 건물 양도에 따른 최종 분리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경과규정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해당 GR 의 발효일 이전에 양도에 대한대금 지불 및 세금 부채가 모두 정산된 경우, GR-34 및 GR-40 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양도에 대한 대금 지불 및 세금 부채가 해당 GR 의 발효일 이전에일부 정산된 경우, 해당 GR 은 발효일 이후 정산된 나머지 부분에적용됩니다.

¹⁰ Government Regulation No.40 Year 2016 concerning Income Tax o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a specific 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 scheme ("GR-40")



⁹ Government Regulation No.34 Year 2016 concerning Income Tax o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rights to L&Bs and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of L&Bs and its revisions ("GR-34")

PMK-81 에 의해 철회된 PMK 규정 내역

No.	MoF Regulation	Title
1	624/KMK.04/1994	The withholding of Income Tax Article 26 on Income in the Form of Insurance Premiums and Reinsurance Premiums Paid to Insurance Companies Abroad
2	282/KMK.04/1997	The implementation of Income Tax Collection on Income from Share Transactions on the Stock Exchange
3	434/KMK.04/1999	The withholding of Income Tax Article 26 on Income Received or Obtained by Foreign Taxpayers other than Permanent Establishments ("PE") on Income in the Form of Profits from the Sale of Shares
4	Article 7 paragraph (2-3) of 196/PMK.03/2007 <i>jo</i> . 123/PMK.03/2019	Procedures for Organising Bookkeeping Using Foreign Languages and Currencies Other than Rupiah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Annual Income Tax Returns for Corporate Taxpayers as amended several times, most recently by MoF Regulation No.123/PMK.03/2019
5	Article 6 paragraph (2) of 40/PMK.03/2010	Procedures for Calculating, Collecting, Depositing, and Reporting VAT on the Utilisation of Intangible Taxable Goods (<i>Barang Kena Pajak/"BKP"</i>) and/or Taxable Services (<i>Jasa Kena Pajak/"JKP"</i>) from Outside the Customs Area
6	65/PMK.03/2010	Procedures for Reducing VAT/LST on Returned BKPs and VAT on Cancelled JKPs
7	73/PMK.03/2010	Appointment of Contractors for Cooperation Contracts for Oil and Gas Business and Contractors or Holders of Authority/Licence for Geothermal Resource Utilisation to Collect, Deposit, and Report VAT/LST, as well as Procedures for Collection, Deposit, and Reporting
	Article 5 paragraph (3) of 111/PMK.03/2010	Procedures for Withholding, Depositing, and Reporting Income Tax on Dividends Received or Obtained by Domestic Individual Taxpayers
9	Article 6 paragraph (3) of 112/PMK.03/2010	Procedures for Withholding, Depositing, and Reporting Income Tax on Interest on Savings Paid by Cooperatives to Individual Cooperative Members
10	17/PMK.03/2011	Requests for Refunds of Overpayments of L&B Tax
11	Article 8 paragraph (3) 85/PMK.03/2011 <i>jo</i> . 7/PMK.011/2012	Procedures for Withholding, Depositing, and Reporting Income Tax on Bond Interest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No.7/PMK.011/2012 concerning Amendments to MoF Regulation No.85/PMK.03/2011
12	257/PMK.011/2011	Procedures for Withholding and Payment of Income Tax on Other Contractor Income in the Form of Uplift or Similar Compensation and/or Contractor Income from the Transfer of Participating Interest
13	79/PMK.02/2012 <i>jo.</i> 70/PMK.02/2015	Procedures for Depositing and Reporting State Revenues from Upstream Oil and/or Gas Business Activities and Calculating Income Tax for the Payment of Income Tax on Oil and/or Gas in the Form of Oil and/or Gas Volume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No.70/PMK.02/2015
14	10/PMK.03/2013	Procedures for Refunds of Overpayments of Taxes that Should Not Be Payable, repealed and declared invalid
15	Article 23-24 of 76/PMK.03/2013 jo. 131/PMK.03/2017	Administration of L&B Tax for the Mining Sector for Oil, Gas, and Geothermal Mining as amended several times, most recently by MoF Regulation No.131/PMK.03/2017 concerning the Second Amendment to MoF Regulation No.76/PMK.03/2013 concerning Administration of L&B Tax for the Mining Sector for Oil, Gas, and Geothermal Mining
16	242/PMK.03/2014 jo. 18/PMK.03/2021	Procedures for Payment and Deposit of Taxes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No.18/PMK.03/2021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Law No.11 Year 2020 concerning Job Creation in the Field of Income Tax, VAT, and LST, as well as KUP



		Tax Returns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No.18/PMK.03/2021
17	243/PMK.03/2014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Law No.11 Year 2020 concerning Job
17	jo. 18/PMK.03/2021	Creation in the Field of Income Tax, VAT, and LST, as well as KUP
		Procedures for Refunds of Overpayments of Taxes that Should Not Be
18	187/PMK.03/2015	Payable
4.0	Article 4-5 of	Tax Treatment for Taxpayers and PKP Using Certain KIK Schemes in
19	200/PMK.03/2015	the Context of Financial Sector Deepening
20	244/PMK.03/2015	Procedures for Calculating and Refunding Overpayments of Taxes
		Procedures for Depositing, Reporting, and Exemption from Income Tax
21	261/PMK.03/2016	o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Rights to L&Bs, and Binding Sale and
21	201/F WIK.03/2010	Purchase Agreements (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PPJB") on
		L&Bs and Their Amendments
	34/PMK.010/2017	Collection of Income Tax Article 22 in Connection with Payments for the
22	jo.	Delivery of Goods and Activities in the Field of Import or Other Business
	41/PMK.010/2022	Activities as amended several times, most recently by MoF Regulation
		No.41/PMK.010/2022
23	37/PMK.03/2017	Procedures for Payment and Reporting of Income Tax o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Certain KIK Schemes
		The Use of Book Value for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Assets in the
	,	Context of Mergers, Consolidations, Expansions, or Business Takeovers
24	52/PMK.010/2017	as amended several times, most recently by MoF Regulation
		No.56/PMK.010/2021
25	4.47/DM// 00/0047	Procedures for Taxpayer Registration and Deletion of NPWP as well as
25	147/PMK.03/2017	Confirmation and Revocation of PKP Appointment
		The Appointment of Holders of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s for
26	166/PMK.03/2018	Production Operations to Collect, Deposit, and Report VAT and LST, as
		well as Procedures for Collection, Deposit, and Reporting
		The Calculation of Income Tax Instalments in the Current Tax Year that
07	045/514/4 00/0040	Must Be Paid by New Taxpayers, Banks, SOEs, Regional-Owned
27	215/PMK.03/2018	Enterprises, Publicly Listed Companies, Other Taxpayers Required to
		Prepare Periodic Financial Reports, and Certain Individual Entrepreneurs
28	32/PMK.010/2019	The Limits of Activities and Types of JKPs Subject to VAT on Exports
		Procedures for Submitting and Settling Requests for Refunds of VAT on
29	120/PMK.03/2019	Goods Carried by Individual Foreign Passport Holders
		Procedures for Registration and Deletion of NPWP, Appointment and
	A +4: ala 0 7 00 af	Revocation of PKP, as well as Withholding and/or Collection, Deposit,
30	Article 2-7, 23 of	and Reporting of Taxes by Government Agencies as amended by MoF
	231/PMK.03/2019	Regulation No.59/PMK.03/2022 concerning Amendments to MoF
		Regulation No.231/PMK.03/2019
	11/PMK.010/2020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78 Year 2019
31	jo.	concerning Income Tax Facilities for Investment in Certain Business
	96/PMK.010/2020	Fields and/or in Certain Regions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	No.96/PMK.010/2020 The Previous of Not Income Reduction Facilities for New Investments
22	16/DMK 010/2020	The Provision of Net Income Reduction Facilities for New Investments
32	16/PMK.010/2020	or Expansions in Certain Business Fields that are Labour-Intensive Industries
-		The Provision of Gross Income Reduction for Certain Research and
33	153/PMK.010/2020	Development Activities in Indonesia
6.1	0/DM// 00/000	Procedures for Collection, Deposit, and Reporting of VAT/LST by SOEs
34	8/PMK.03/2021	and Certain Companies Directly Owned by SOEs as VAT Collectors
	Article 7-13, 37-41,	
35	62-78, 83-102, 106,	The Implementation of Law No.11 Year 2020 concerning Job Creation in
33	109, 111	the Field of Income Tax, VAT, and LST, as well as KUP
	of 18/PMK.03/2021	
36	48/PMK.03/2021	Procedures for Registration, Reporting, and Data Collection of L&B Tax
	. 5,	Objects Control Office Annual Control Office
37	54/PMK.03/2021	Procedures for Recording and Certain Criteria as well as Procedures for
		Organising Bookkeeping for Tax Purposes



38	63/PMK.03/2021	Procedures for Exercising Tax Rights and Fulfilling Tax Obligations as well as Issuance, Signing, and Delivery of Tax Decisions or Determinations Electronically
39	60/PMK.03/2022	Procedures for Appointing Collectors, Collecting, Depositing, and Reporting VAT on the Utilisation of Intangible BKPs and/or JKPs from Outside the Customs Area within the Customs Area through Electronic Commerce
40	61/PMK.03/2022	VAT on Self-Construction Activities
41	67/PMK.03/2022	VAT on the Provision of Insurance Agent Services, Insurance Brokerage Services, and Reinsurance Brokerage Services
42	68/PMK.03/2022	VAT and Income Tax on Crypto Asset Trading Transactions



PMK-81 에 따라 규정된 절차 및 세금 부과 규칙

No. 1	Regulation Tax Returns
	rax Returns
	Procedures for payment, reporting, and exemption of Income Tax on the transfer of rights to L&Bs, and PPJB on L&Bs along with their amendments
3	Procedures for payment and reporting of Income Tax on income from the transfer of Real Estate under certain KIK schemes
4	Procedures for withholding and payment of Income Tax on other contractor income in the form of uplift or similar compensation and/or contractor income from the transfer of participation interest
5	Collection of Income Tax Article 22 in connection with payments for the delivery of goods and activities in the field of import or other business activities
	Calculation of Income Tax installments in the current tax year that must be paid by new taxpayers, banks, SOEs, Regional-Owned Enterprises, publicly listed companies, other taxpayers required to prepare periodic financial reports, and certain individual entrepreneurs
	Withholding of Income Tax Article 26 on income received or obtained by foreign taxpayers other than PEs on income in the form of profits from the sale of shares
8	Withholding of Income Tax Article 26 on income in the form of insurance premiums and reinsurance premiums paid to insurance companies abroad
9	Implementation of Income Tax collection from stock trading transactions on the stock exchange
10	Procedures for payment and reporting of state revenue from upstream oil and gas business activities and calculation of Income Tax for the purpose of paying oil and gas Income Tax in the form of oil and gas volume
11	Procedures for submitting and resolving requests for VAT refunds on goods carried by individual taxpayers holding foreign passports
12	Limitations on activities and types of JKPs subject to VAT on exports
13	Procedures for reducing VAT/LST refunded and VAT on canceled JKP
14.	Procedures for collection, payment, and reporting of VAT and/or LST on luxury goods by SOEs and certain companies directly owned by SOEs as VAT Collectors
	Appointment of contractors for oil and gas cooperation contracts and contractors or holders of authority/permits for geothermal resource exploitation to collect, pay, and report VAT/LST, as well as procedures for collection, payment, and reporting
	Appointment of holders of special mining business permits for production operations to collect, pay, and report VAT/LST, as well as procedures for collection, payment, and reporting
17	VAT on the provision of insurance agent services, insurance brokerage services, and reinsurance brokerage services
18	VAT on self-construction activities
19	Procedures for appointing other parties, collecting, and reporting VAT on the utilisation of intangible BKPs and/or JKPs from outside the Customs Area within the Customs Area through e-Commerce
	VAT and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trading transactions
21	Procedures for exemption from Income Tax on dividends or other income
22	Procedures for crediting Input Tax
23	Procedures for creating, correcting, or replacing tax invoices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Ali Widodo

ali.widodo@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c@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de>id_contactus@pwc.com</code>.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4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